

대구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1나32266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1나32266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9. 14 선고 2020가단12106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원창

피고, 항소인 A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형

변론종결 2022. 4. 20.

판결선고 2022. 6. 24.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9. 14. 선고 2020가단12106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2019. 12.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179,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지급명령

- 1)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2,70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9. 5. 31.부터 2029. 5. 30.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을 한 후,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중소기업은행에 제공하고 동 은행으로부터 5,4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 2) 위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소외 회사가 위 신용보증기간 중 위 신용보증원금의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증원금 및 이에 대한 종속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소외 회사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액 및 이에 대한 신용보증기금법, 동 시행령, 기금의 업무방법서 및 신용보증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정하는 이율의 지연손해금,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원고가 구상채권의 실행 또는 보전을 위하여 소요된 법적절차비용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 3) 이후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20

6. 30. 중소기업은행에 소외 회사의 보증인으로서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1,653,535,789원을 지급하였다.

4) 이후 원고는 소외 회사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20차전12261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위 같은 법원으로부터 “1. 채무자 주식회사 B은 1,663,728,659원 및 그 중 1,653,535,789원에 대하여 2020.6. 30.부터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 채무자 G은 채무자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위 1항 금원 중 107,875,252원 및 그 중 99,915,162원에 대하여 2020. 6. 30.부터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20. 9. 22.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소외 회사의 관계

피고는 소외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던 자이다1).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9. 12. 18. 소외 회사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10,000,000(= 계약금 210,000,000원 + 잔금 300,000,000원)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 2019. 12. 24. 접수 제1182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아직 성립하지는 않았으나 그 당시 구상금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신용보증약정이 위와 같이 체결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하여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소외 회사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위 기초사실과 같이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 보증금을 변제하였는바,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소외 회사)의 무자력 상태

1) 적극재산

(1) 고령군 H 토지, 건물

(2) 고령군 I

(3) 고령군 J

(4) 고령군 L

(5) 고령군 M

(6) 고령군 N

(7) 고령군 O

(8) 고령군 P 소재 각 부동산 및 기계

(9) 이 사건 부동산: 510,000,000원

(1)~(9)항 각 부동산 가액의 합계: 7,560,026,690원(= 7,050,026,690원 + 510,000,000원)

[인정근거]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극재산

순번	채권자	채무액(원)	증거자료
1	원고	1,663,728,659	갑 제3호증
2	중소기업은행	6,959,426,695	갑 제8-1
3	달성군	2,920,450	갑 제8-2
4	국민건강보험공단	7,819,790	갑 제8-3
5	Q은행	323,389,467	갑 제8-4
6	R	16,697,450	갑 제8-5
7	S	300,473,800	갑 제8-6
8	T	355,808,219	갑 제8-7
9	U	13,937,000	갑 제8-8
10	V	83,611,206	갑 제8-9
11	근로복지공단	23,502,740	갑 제8-10
12	W카드	7,862,000	사실조회회신
합산액		9,759,177,476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고, 현재도 무자력 상태에 있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14 내지 19,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즉, 이미 채무초과로 무자력 상태에 있는 소외 회사가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정 채권자에게만 만족을 주는 행위이고, 이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 층 더 부족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또한 소외 회사는 이러한 무자력 상태를 알면서도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결국 자신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가 영위하던 폐기물처리업을 승계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의 무자력 상태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며,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1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처분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지 않음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고,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불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지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었다.

②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가계약금 2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200,000,000원이 지급된 사실만 인정될 뿐이며 이 금액도 어떤 경위에 의하여 지급된 것인지 알 수 없고, 이 사건 매매대금에 비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가계약금의 비율 및 액수도 거래 관념상 매우 이례적이다.

- ③ 피고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5억 원이 넘는 부동산의 매매 중개수수료가 495,000원임은 매우 이례적이다.
- ④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이 3억 원이었음에도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외에도 피고는 2019. 12. 24.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게 F(E) 명의로 9,130,846원 및 82,171,000원2) 을 각 입금하였는바, 소외 회사와 피고가 특수 관계에 있었을 거라 의심된다.
- ⑤ 피고는, 피고의 실제 대표자 E 명의로 폐기물처리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으며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9. 12.경에 이루어졌는데도, 피고는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아무런 활동을 하지도 않다가 이 사건 소송이 한창 진행된 이후인 2021. 3.경 이후에야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인바, 피고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는 생각되지 아니하며, 피고는 농축산물 생산, 판매사업 등을 영위하는 영농사업 법인인데 갑작스럽게 폐기물처리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도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 ⑥ 피고는, 중소기업은행과 원고가 협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을 허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매매와 근저당권 말소가 보증부특약에 저촉되는지를 논의한 것일 뿐인데,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와는 별개이다.

3. 가액배상액의 산정

가.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므로, 그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 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말소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등 참조).

나. 위 기초사실과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기관, 법원행정처,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대구재기지원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 내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거래가액 합계는 510,0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부동산에는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 2018. 12. 14. 접수 제12141호 및 같은 등기소 2019. 6. 20. 접수 제5806호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2019. 12. 24.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이를 말소시킨 사실이 인정되고, 위 근저당권 말소 당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가 331,000,00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따라서 위 부동산의 거래가액 510,000,000원에서 수익자인 피고가 소외 회사의 근저당채무를 변제한 금액 331,000,000원을 공제한 179,000,000원이 가액배상의 범위가 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179,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17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천, 판사 김민지 휴가로 인한 대리서명, 재판장, 판 사, 판사 박소영

별지

- 1) 피고는 소외 회사가 아니라 (주) K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5-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두 회사의 본점소재지가 같은 점, 두 회사의 대표자가 G으로 동일한 점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갑 8-1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소외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수입신용장 발행에 따른 채무로

보인다.